

서울특별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559
------	-----

제안년월일 : 2008년11월28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번호를 개정하고,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목적규정에 약칭을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고, 법률조문 띄어쓰기 및 조문 내용을 알기 쉽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추어 개정안의 일부내용에 대하여 수정·보완하고, 부칙 내용의 일부를 삭제함

2. 수정내용

- 안 제11조제3항 중 “정부기관이 주관하는”을 “정부기관이 인정하는”으로, “조경수 분야”를 “조경분야로 하고, 안 제13조제1항과 안 제14조제3호 중 “토질개량”을 “토양개량”으로 한다.
- 안 부칙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서울특별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11조제3항 중 “정부기관이 주관하는”을 “정부기관이 인정하는”으로, “조경수 분야”를 “조경분야로 한다.
- 안 제13조제1항과 안 제14조제3호 중 “토질개량”을 “토양개량”으로 한다.
- 안 부칙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p>중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보호대"라 한다)을 말한다.</p>	<p>----- ----- ----- -----</p>	
<p>제4조(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리청은 관할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로수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1.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가로수 현황 분석 3. 지역별·노선별 가로수 기본 식재수종 4. 가로수 양 및 결의 중진과 정비 방안 5.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정비 계획 등</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 기본계획은 <u>매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u></p>	<p>제4조(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가로수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p> <p>1.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가로수 현황 분석 3. 지역별·노선별 가로수 기본 식재수종 4. 양질의 가로수 중진과 정비 방안 5.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정비 계획 등</p> <p>② 관리청은 제1항의 가로수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1년 이내에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제4조(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② (개정안과 같음)</p>
<p>제5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가로수의 수종은 가로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 5. 기타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p> <p>②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u>별표 1과 같다.</u></p>	<p>제5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5. <u>그 밖에</u> ----- ② ----- <u>별표 2와 같다.</u></p>	<p>제5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개정안과 같음)</p>
<p>제6조(식재 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u>안전과</u>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u>각 호</u></p>	<p>제6조(식재 위치) ----- ----- ----- <u>안전은 확보하고</u> ----- ----- <u>각 호에서</u> -----</p>	<p>제6조(식재 위치) (개정안과 같음)</p>

<p>가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p> <p>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 설계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 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에 접한 보도에 식재할 경우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1m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단 보도폭원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p> <p>2. (생 략)</p> <p>3. 중앙분리대 등 기타 관리정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p>	<p>-----,</p> <p>1. -----</p> <p>-----</p> <p>-----</p> <p>-----</p> <p>-----</p> <p>경계선으로부터 -----</p> <p>-----, 다만, -----</p> <p>-----,</p> <p>2. (현행과 같음)</p> <p>3. ----- 그 밖에 -----</p> <p>-----,</p>	
<p>제7조(가로수의 식재 기준) 가로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p> <p>1. 교목</p> <p>가. 식재간격은 6~8m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p> <p>나. ~ 다. (생 략)</p> <p>라. 도로의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에는 동일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p> <p>2. ~ 4. (생 략)</p>	<p>제7조(가로수의 식재 기준)</p> <p>제7조의2(가로수 심의위원회) 관리 경은 다음 각 호 시정읍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4조에 따른</p>	<p>제7조(가로수의 식재 기준) (개정안과 같음)</p> <p>제7조의2(가로수 심의위원회) (개정안과 같음)</p>
<p><신 설></p>	<p>제7조의2(가로수 심의위원회) 관리 경은 다음 각 호 시정읍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4조에 따른</p>	<p>제7조의2(가로수 심의위원회) (개정안과 같음)</p>

<p>제8조(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등 설치) ① <u>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운전자, 보행인 등의 시야방해로 인하여 가로수와 상충이 될 수 있는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의 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할 때는 관리경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u></p> <p>② <u>관리경은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의 시설물 설치 협의가 있는 경우 가능한 한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에 의해 차폐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여건에 따라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u></p> <p>③ (생략)</p> <p>제9조(식재 시기) 식재의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u>다만</u> 관리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p> <p>제10조(갱신 및 보식) ① <u>갱신 및 보식 대상 가로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u></p> <p>1. ~ 5. (생략)</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 또는 보식하고자 할 때에는 데목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한다. 다만, 적기가 아닌 때에는 돌아오는 식재 시기에 식재할 수 있다.</u></p> <p>제11조(가지치기) ① (생략)</p>	<p><u>서울특별시도시중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u></p> <p>1. <u>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u></p> <p>2. <u>가로수 바꿔심기 및 신규식재에 관한 사항</u></p> <p>제8조(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등 설치) ① <u>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가로수와 상충이 될 수 있는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할 때에는 관리경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u></p> <p><삭제></p> <p>③ (현행과 같음)</p> <p>제9조(식재 시기) ----- ----- ----- <u>다만</u> ----- -----</p> <p>제10조(바꿔심기 및 데워심기) ① <u>바꿔심기 및 데워심기 대상가로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u></p> <p>1. ~ 5.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에 따라 바꿔심기 또는 데워심기를 할 때에는 현장조사</u>----- ----- -----</p> <p>제11조(가지치기) ① (현행과 같음)</p>	<p>제8조(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등 설치) ① (개정안과 같음)</p> <p><삭제></p> <p>③ (개정안과 같음)</p> <p>제9조(식재 시기)(개정안과 같음)</p> <p>제10조(바꿔심기 및 데워심기)① (개정안과 같음)</p> <p>1. ~ 5. (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p>제11조(가지치기) ① (개정안과 같음)</p>
--	--	--

<p>㉔ 가로수 가지치기시에는 관리청 관계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 가지치기를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위탁할 수 있다.</p>	<p>㉔ ----- ----- -----, 다만 ----- ----- ----- 제18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p>	<p>㉔ (개정안과 같음)</p>
<p>㉕ (생략)</p>	<p>㉕ (현행과 같음)</p>	<p>㉕ (개정안과 같음)</p>
<p><u><신 설></u></p>	<p>㉔ 가지치기를 하려는 자는 시장 및 정부기관이 주관하는 이수교육 또는 조경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등록단체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p>	<p>㉔ 가지치기를 하려는 자는 시장 및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이수교육 또는 조경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등록단체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p>
<p><u><신 설></u></p>	<p>㉕ 관리청은 가지치기를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㉕ (개정안과 같음)</p>
<p><u><신 설></u></p>	<p>㉔ 시장은 관리청이 시행하는 가지치기 사업 중 서울특별시도에서 시행하는 가지치기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㉔ (개정안과 같음)</p>
<p>제12조(병해충의 방제) 관리청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p>	<p>제12조(병해충의 방제) ----- ----- -----, -----,</p>	<p>제12조(병해충의 방제) ----- ----- -----,</p>
<p>1. (생략)</p> <p>2.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하여 가지치기 갱신·보식 등을 통한 입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로 인해 발생된 가지와 낙엽 등은 필요한 경우 소각하여 처리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 ----- 바꿔심기·테워심기 ----- ----- -----,</p>	<p>1. (개정안과 같음)</p> <p>2. (개정안과 같음)</p>
<p>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업적 방제로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p>	<p>3. ----- -----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 ----- -----,</p>	<p>3. (개정안과 같음)</p>
<p>4. 제3호에 의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경우 인근 주민·보행자·운전자 또는 동·식물에 대한 피해, 수계 유입으로</p>	<p>4. 제3호에 따른 ----- ----- -----</p>	<p>4. (개정안과 같음)</p>

<p>인한 생태계 파괴, 토양오염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로 필요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p>	<p>----- ----- -----, 5. ----- 잡기 위하여 -----</p>	<p>5. (개정안과 같음)</p>
<p>5. 월동중인 유충을 포살하기 위하여 짚이나 새끼 등을 가로수 줄기에 감아서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다.</p>	<p>----- ----- -----, 6. -----</p>	<p>6. (개정안과 같음)</p>
<p>6.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시에는 관리청 관계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제업무를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위탁 할 수 있다.</p>	<p>----- ----- 다만 ----- ----- 제18조에 따라 ----- -----, 제13조(가로수의 외과수술 등) ①</p>	<p>6. (개정안과 같음)</p>
<p>제13조(가로수의 외과수술 등) ①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절토·객토, 통기구, 관수시설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을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13조(가로수의 외과수술 등) ① ----- ----- ----- ----- ----- 토결개량 ----- 관수시설 설치 ----- 다만 ----- ----- ----- 제18조에 따라 ----- ----- -----, ② (현행과 같음)</p>	<p>제13조(가로수의 외과수술 등) ① ----- ----- ----- ----- ----- 토양개량 ----- 관수시설 설치 ----- 다만 ----- ----- ----- 제18조에 따라 ----- ----- -----, ② (개정안과 같음)</p>
<p>② (생략)</p>	<p>----- -----, -----</p>	<p>----- -----, -----</p>
<p>제14조(지형과 토양 보호) 관리청은 다음과 같이 가로수가 식재된 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여야 한다.</p>	<p>제14조(지형과 토양 보호) ----- ----- -----, 1. -----</p>	<p>제14조(지형과 토양 보호) ----- ----- -----, 1. (개정안과 같음)</p>
<p>1. 가로수의 식재지 또는 계획지에 대한 절토·성토 등 지형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 다. (생략)</p>	<p>----- ----- 다만 ----- -----, 가. ~ 다. (현행과 같음)</p>	<p>1. (개정안과 같음)</p>
<p>라. 기타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 한 경우</p>	<p>----- ----- 그 밖에 ----- -----, 라. 그 밖에 -----</p>	<p>가. ~ 다. (개정안과 같음) 라. (개정안과 같음)</p>
<p>2. (생략)</p>	<p>-----</p>	<p>-----</p>
<p>3. 가로수 조성계획지의 토양 또</p>	<p>-----</p>	<p>-----</p>

<p>는 기 조성지의 토양이 달 압, 오염, 적 박화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 생육 에 부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 토 또는 시비하여 가로수 생 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p> <p>4. 가로수 식재, 불가피한 지형 의 변경 등에 의해 발생하 는 보존이 필요한 표토는 일 정한 장소에 수집·보관하였 다가 표토로 재사용하여야 하며, 표토의 깊이는 30cm 이상으로 한다.</p> <p>5. (생 략)</p>	<p>2. (현행과 같음)</p> <p>3. ----- ----- 오 염, 적박화 ----- ----- ----- 토질기량 ----- ----- -----,</p> <p>4. ----- 지형의 변경 등에 따라 ----- ----- ----- -----,</p>	<p>2. (개정안과 같음)</p> <p>3. ----- ----- 오 염, 적박화 ----- ----- ----- 토양기량 ----- ----- -----,</p> <p>4. (개정안과 같음)</p>
<p>제16조(점검) ① (생 략)</p> <p>② 점검대상은 갱신을 요하는 가 로수, 병충해의 감염여부, 고사 목 보식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 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p> <p>③ (생 략)</p> <p>④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 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 해야 할 경우 또는 식재 보식·갱 신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점 검할 수 있다.</p>	<p>5. (현행과 같음)</p> <p>제16조(점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바꿔심기 ----- ----- 매워심기 ----- -----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 바꿔심기·매워심기 ----- ----- -----,</p>	<p>5. (개정안과 같음)</p> <p>제16조(점검)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개정안과 같음)</p> <p>④ (개정안과 같음)</p>
<p>제17조(가로수관리의 주민참여 등) ① (생 략)</p> <p>② 관리청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 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 시하여야 한다.</p> <p>1. ~ 3. (생 략)</p> <p>4. 기타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 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p>	<p>제17조(가로수관리의 주민참여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각호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그밖에 ----- ----- -----,</p>	<p>제17조(가로수관리의 주민참여 등)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p>1. ~ 3. (개정안과 같음)</p> <p>4. (개정안과 같음)</p>

<p>③ 모든 주민은 관리청이 시행하는 가로수의 유지·관리 시책에 가능한 한 협력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③ ----- ----- 협력 ----- ④ (현행과 같음)</p>	<p>③ (개정안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8조(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 ① 관리청은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 업무를 권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108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p> <p>②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법시행규칙 제2조의3 제1항제3호 관련 별표 1의 제3호 수목피해진단·처방 및 치유사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또는 산림조합법 제108조 규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로 하여금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p>	<p>제18조(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 ① ----- ----- 「권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 1에 따른 ----- ----- ----- 제108조에 따른 ----- ----- -----</p> <p>② 제13조에 따라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별표1 제3호의 수목피해진단·처방 및 치유사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또는 산림조합법 제108조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 하여야 한다.</p>	<p>제18조(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 ① (개정안과 같음)</p> <p>③ (개정안과 같음)</p>
<p>제19조(훼손자부담금) ① 관리청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도로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훼손자에게 훼손자부담금을 정수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관리청과 협의하여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훼손자부담금을 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로수 훼손의 경우에는 하자를 고려하여 원상복구 상당금액을 2년간 예치토록 할 수 있으며 점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p>	<p><삭제></p>	<p><삭제></p>

<p><u>여야 한다.</u> <u>⑤ 훼손자부담금의 정수와 집행 및 원상복구시 하자를 고려한 비용 예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2와 같다.</u></p>		
<p><u>제20조(원인자부담금) ①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가로수의 가지치기, 제거 또는 이식이 필요할 경우에는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할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의 가지치기와 이식은 관리청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u> <u>③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세부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제19조 제3항의 별표 2와 같다.</u> <u>1. 이식하는 경우는 당해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비용</u> <u>2. 제거하는 경우는 당해 수목가 및 제거비용</u> <u>3. 가지치기, 훼손 등의 경우는 당해 소요비용</u></p>	<p><u>제20조(원인자부담금) 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가로수의 가지치기, 제거 또는 이식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가로수의 가지치기와 이식은 관리청이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u> <u>③ 원인자부담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u> <u>1. 이식하는 경우는 해당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비용</u> <u>2. 제거하는 경우는 해당 수목가액 및 제거비용</u> <u>3. 가지치기, 훼손 등의 경우는 소요비용</u> <u>④ 관리청은 가로수와 가로수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3항에 따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훼손자가 관리청과 협의하여 직접 복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u></p>	<p><u>제20조(원인자부담금) ①④ (개정안과 같음)</u></p>
<p><u>제21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관리청은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u></p>	<p><u>제21조(부담금의 징수) ① -----제20조에 따라-----</u></p>	<p><u>제21조(부담금의 징수) ①(개정안과 같음)</u></p>

<p>여 득족하여야 한다.</p> <p>㉓ 관리청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가산금 산정에 이를 준용한다.</p> <p>㉔ 관리청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제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p>	<p>-----,</p> <p><삭 제></p> <p>㉓----- 부담금 -----</p> <p>-----</p> <p>-----</p> <p>-----,</p>	<p><삭 제></p> <p>㉓ (개정안과 같음)</p>
<p>제22조(관리의 협의 및 재정) ①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가로수의 관리는 관계 관리청의 협의에 의하여 그 관리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p>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 관리청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제22조(관리의 협의 및 재정) ① -----</p> <p>-----</p> <p>해당 관리청간의 협의에 따라 -----</p> <p>-----,</p> <p>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관리청은 시장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제22조(관리의 협의 및 재정) ①~② (개정안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훼손자부담금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한 훼손자부담금은 원인자부담금으로 본다.</p> <p>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4조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2.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p> <p>3. 가로수 바뀌심기 및 신규식재에 관한 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훼손자부담금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한 훼손자부담금은 원인자부담금으로 본다.</p> <p>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4조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2.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p> <p>3. 가로수 바뀌심기 및 신규식재에 관한 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훼손자부담금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한 훼손자부담금은 원인자부담금으로 본다.</p> <p>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4조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2.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p> <p>3. 가로수 바뀌심기 및 신규식재에 관한 사항</p>

<p>㉔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삭 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푸른도시국 조경과 사무 중 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도시교통본부 도로계획·도로 관리담당관 사무 중 제1호 근 거법령란 “「도로법」제24 조”를 “「도로법」제23조”로 한다.</p>			
주관 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조경 과	1. 녹지대의 설치 및 관리(단, 세종로·시철로의 녹지대 설치 및 관리, 노폭 20m이상 도로신설시의 녹지대 설치는 제외)	○ 「도로법」 제23조	구청장
	3. 세종로, 시철로의 녹지대의 설치·관리	○ 「도로법」 제23조	녹지사업소장
	4. 자율저전압도로의 녹지대의 설치·관리	○ 「도로법」 제23조	도시기민시설본부장

(다음 페이지에 계속)

서울특별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규정함으로써”를 “정함으로써”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생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호 중 ““가로수”라 함은”을 ““가로수”란”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에 의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도로법 제11조에 의한”을 “「도로법」 제11조 및 제1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기타 법령에 의하여”를 “그 밖의 법령에 따 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갱신”이라 함은”을 ““바꿔심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본문 중 ““보식”이라 함은”을 ““메워심기”란”으 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가로수 지주대”라 함은”을 ““가로 수 지주대”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가로수 보호틀”이라 함은”을 ““가로수 보호 틀”이란”으로, “예방 하기”를 “예방하기”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가로수 보호덮개”라 함은”을 ““가로수 보호덮개”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가로수 보호대”라 함은”을 ““가로수 보호대”란”으로 한다.

2. “관리청”이란 별표1에 따라 가로수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의 내용이 포함된 가로수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가로수 현황 분석
3. 지역별·노선별 가로수 기본 식재수종
4. 양질의 가로수 증진과 정비 방안
5.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정비 계획 등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가로수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1년 이내에 세부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1과”를 “별표 2와” 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과”를 “안전을 확보하고”로, “각 호가”를 “각 호에서”로 하 고,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경계선 으로부터”를 “경계선으로부터”로, 단서 중 “단”을 “다 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1호가목 단서 중 “다만”을 “다만,”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본문 및 단서 중 “동일”을 각각 “같은”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가로수 심의위원회) 관리청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 2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가로수 바꿔심기 및 신규식재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가로수와 상충이 될 수 있는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할 때에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 단서 중 “다만”을 “다만,”으로 한다.

제10조 제목 “(갱신 및 보식)”을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 또는 보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매목조사”를 “제1항에 따라 바꿔심기 또는 메워심기를 할 때에는 현장조사”로 한다.

①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가로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11조제2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으로, “제18조의 규정에 의해”를 “제18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가지치기를 하려는 자는 시장 및 정무기관이 인정하는 이수교육 또는 조경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등록단체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관리청은 가지치기를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시장은 관리청이 시행하는 가지치기 사업 중 서울특별시도에서 시행하는 가지치기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제2호 중 “갱신·보식”을 “바꿔심기·메워심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를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3호에 의한”을 “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포살하기 위하여”를 “잡기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단서 중 “다만”을 “다만,”으로, “제18조의 규정에 의해”를 “제18조에 따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환토·객토”를 “토양개량”으로, “관수시설”을 “관수시설 설치”로, 같은 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으로,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8조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제1호 단서 중 “다만”을 “다만,”으로, 같은 호 라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답압, 오염, 척박화”를 “오염, 척박화”로, “객토”를 “토양개량”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지형의 변경 등에 의해 발생하는”을 “지형의 변경 등에 따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갱신을”을 “바꿔심기를”로, “보식”을 “메워심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식·갱신”을 “메워심기·바꿔심기”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가능한 한 협력”을 “협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한”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1에 따른”으로, “10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3조에 따라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별표1 제3호의 수목피해진단·처방 및 치유사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또는 「산림조합법」 제108조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 하여야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원인자부담금) 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가로수의 가지치기, 제거 또는 이식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로수의 가지치기와 이식은 관리청이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원인자부담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3과 같다.

- 1. 이식하는 경우는 해당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비용
- 2. 제거하는 경우는 해당 수목가액 및 제거비용
- 3. 가지치기, 훼손 등의 경우는 소요비용

④ 관리청은 가로수와 가로수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훼손자에게 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훼손자가 관리청과 협의하여 직접 복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제목 “(부담금 강제 징수)”를 “(부담금 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0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부담금”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관계 관리청의 협의에 의하여”를 “해당 관리청간의 협의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관리청은 시장에게 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표 2 및 별표 3으로 하고 별표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중전의 별표1) 중 제4호 “병충”을 “병해충”으로 한다.

별표 3(중전의 별표 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훼손자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한 훼손자부담금은 원인자부담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가로수 바뀌심기 및 신규식재에 관한 사항

【별표 1】

가로수관리청(제3조제2호 관련)

구 분	관리청
1. 자동차 전용도로의 가로수 설치·관리와 특별시도 신설시의 가로수 설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2. 세종로, 시청 앞의 가로수 설치·관리	녹지사업소장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지역의 가로수 설치 및 관리	구청장

【별표 3】

원인자부담금(제20조제3항 관련)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p>1. 벌채, 수간절단 등으로 조경수 가치가 없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 설계비</p> <p>2. 상당한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 및 강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 부담금 = 수목비의 20% + 보호시설 재료비 및 작업비 ※ 강도의 가지치기 : 수관의 1/3 이상 ※ 작업비 : 상용인부 활용시 세외수입 조치</p> <p>3. 약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 부담금 = 수목비의 10% + 작업비</p> <p>4. 이식을 원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 설계비 ※ 도급공사 설계비 : 세입세출외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 설계비 + 이식비 ※ 이식비 : 상용인부 활용시 세외수입 조치</p> <p>5.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 설계비 ※ 도급공사 설계비 : 세외수입 조치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설계비 + 제거비 ※ 제거비 : 상용인부 활용시 세외수입 조치</p>
<p>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 적용(수목 등 재료비 포함)하여 산정</p> <p>수 목 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적용,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중 시가 적용</p> <p>예치금납부방법 :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가능</p> <p>예치금예치기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p> <p>예치금 환불 등 : 예치기간 경과 후 이식목에 대한 조경수로서의 가치여부 를 판단하여 환불 또는 세외수입 조치</p>

(다음 페이지에 계속)

내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 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설물, 나무과쇄물 또는 자갈 등(이하 "보호덮개"라 한다)을 말한다.

8. "가로수 보호대"라 함은 정류장·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보호대"라 한다)을 말한다.

8. "가로수 보호대"란 -----

제4조(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리청은 관할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로수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가로수 현황 분석
3. 지역별·노선별 가로수 기본 식재 수종
4. 가로수 양 및 질의 증진과 정비 방안
5.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정비 계획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기본계획은 매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가로수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가로수 현황 분석
3. 지역별·노선별 가로수 기본 식재 수종
4. 양질의 가로수 증진과 정비 방안
5.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정비 계획 등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가로수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1년 이내에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가로수의 수종은 가로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기타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식재 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각 호가**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에 접한 보도에 식재할 경우 **보도 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1m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단 보도폭원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생략)
3. 중앙분리대 등 **기타** 관리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7조(가로수의 식재 기준) 가로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

제5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② ----- **별표 2와** 같다.

제6조(식재 위치) -----

----- **안전을 확보하고**

---- **각 호에서** -----,

1. -----

경계선으로부터 -----

-----, **다만,** -----,

2. (현행과 같음)

3. ----- **그 밖에** -----

-----,
-----,

제7조(가로수의 식재 기준) -----

-----,

1. 교목

가. 식재간격은 6~8m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 다. (생략)

라. 도로의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에는 동일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2. ~ 4. (생략)

1. ----

가. -----
----, 다만, -----

나. ~ 다. (현행과 같음)

라. ---- 같은 -----
- 같은 -----
----- 같은 -----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가로수 심의위원회) 관리

청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가로수 바꿔심기 및 신규식재에 관한 사항

제8조(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등 설치) ①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운전자, 보행인 등의 시야방해로 인하여 가로수와 상충이 될 수 있는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의 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할 때에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등 설치) ①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가로수와 상충이 될 수 있는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할 때에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p><u>② 관리청은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의 시설물 설치 협의가 있는 경우 가능한 한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에 의해 차폐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여건에 따라 그러 하지 않을 수 있다.</u></p>	<p><삭 제></p>
<p>③ (생 략)</p>	<p>③ (현행과 같음)</p>
<p>제9조(식재 시기) 식재의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u>다만</u>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p>	<p>제9조(식재 시기) ----- ----- -----, <u>다</u> <u>만</u>, ----- ----- -----</p>
<p>제10조(갱신 및 보식) <u>① 갱신 및 보식 대상 가로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u></p>	<p>제10조(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u>①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가로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u></p>
<p>1. ~ 5. (생 략)</p> <p><u>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 또는 보식하고자 할 때에는 매목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한다. 다만, 적기가 아닌 때에는 돌아오는 식재 시기에 식재할 수 있다.</u></p>	<p>1. ~ 5. (현행과 같음)</p> <p><u>② 제1항에 따라 바꿔심기 또는 메워심기를 할 때에는 현장조사</u> ----- ----- -----</p>
<p>제11조(가지치기) <u>① (생 략)</u></p> <p><u>② 가로수 가지치기시에는 관리청 관계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 가지치기를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위탁할 수 있다.</u></p>	<p>제11조(가지치기) <u>① (현행과 같음)</u></p> <p><u>②</u> ----- ----- --, <u>다만</u>, ----- ----- <u>제18</u> <u>조에 따라</u> 위탁할 수 있다.</p>
<p>③ (생 략)</p>	<p>③ (현행과 같음)</p>

<p><신 설></p>	<p>④ <u>가지치기를 하려는 자는 시장 및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이수교육 또는 조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등록단체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u></p>
<p><신 설></p>	<p>⑤ <u>관리청은 가지치기를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u></p>
<p><신 설></p>	<p>⑥ <u>시장은 관리청이 시행하는 가지치기 사업 중 서울특별시도에서 시행하는 가지치기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제12조(병해충의 방제) 관리청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하여 가지치기·<u>갱신·보식</u>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로 인해 발생된 가지와 낙엽 등은 필요한 경우 소각하여 처리한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 <u>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u> 판단될 경우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4. <u>제3호에 의한</u>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경우 인근 주민·보행자·운전자 또는 동·식물에 대한 피해, 수계 유 	<p>제12조(병해충의 방제) ----- ----- ----- ----- ----- 1. (현행과 같음) 2. ----- -----<u>바꿔심기·메워심기</u> ----- ----- 3. ----- ----- <u>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u> ----- ----- ----- 4. <u>제3호에 따른</u> ----- ----- -----</p>

입으로 인한 생태계파괴, 토양오염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로 필요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월동중인 유충을 포살하기 위하여

짚이나 새끼 등을 가로수 줄기에 감아서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다.

6.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시에는 관리청 관계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제 업무를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위탁 할 수 있다.

제13조(가로수의 외과수술 등) ①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객토, 통기구, 관수시설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의 외과 수술 등을 제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4조(지형과 토양 보호) 관리청은 다음과 같이 가로수가 식재된 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여야 한다.

1. 가로수의 식재지 또는 계획지에 대한 절토·성토 등 지형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각목에

5. ----- 잡기 위하여

6. -----

-----, 다만, -----

----- 제18조에 따라 -----

제13조(가로수의 외과수술 등) ① -----

----- 토양개량 -----

관수시설 설치 -----

다만, -----

----- 제

18조에 따라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지형과 토양 보호) -----

1. -----

-----, 다만, -----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 다. (생략)

라. 기타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
한 경우

2. (생략)

3. 가로수 조성계획지의 토양 또는 기
조성지의 토양이 답압, 오염, 척박
화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 생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객토 또
는 시비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
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가로수 식재, 불가피한 지형의 변
경 등에 의해 발생하는 보존이 필
요한 표토는 일정한 장소에 수집·
보관하였다가 표토로 재사용하여야
하며, 표토의 깊이는 30cm 이상
으로 한다.

5. (생략)

제16조(점검) ① (생략)

② 점검대상은 갱신을 요하는 가로수,
병충해의 감염여부, 고사목 보식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
상태 등으로 한다.

③ (생략)

④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
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
우 또는 식재 보식·갱신 등 관리상 필
요한 시기에 점검할 수 있다.

제17조(가로수관리의 주민참여 등) ①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그 밖에 -----

2. (현행과 같음)

3. ----- 오염, 척박

화 ----- 토양개량

4. ----- 지형의 변
경 등에 따라 -----

5. (현행과 같음)

제16조(점검) ① (현행과 같음)

② ----- 바꿔심기를 -----
메워심기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바꿔심기·메워심기 --

제17조(가로수관리의 주민참여 등) ①

<p>(생략)</p> <p>② 관리청은 다음의 <u>각호</u>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4. <u>기타</u>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p> <p>③ 모든 주민은 관리청이 시행하는 가로수의 유지·관리 시책에 <u>가능한 한 협력</u>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현행과 같음)</p> <p>② ----- <u>각 호</u> -----</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에</u> -----</p> <p>-----</p> <p>-----</p> <p>③ ----- <u>협력</u> -----</p> <p>-----</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8조(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 ① 관리청은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 업무를 <u>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한</u>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u>108조의 규정에 의한</u>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p> <p>② <u>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법시행규칙 제2조의3 제1항제3호 관련 별표 1의 제3호 수목피해 진단·처방 및 치유사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또는 산림조합법 제108조 규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로 하여금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u></p>	<p>제18조(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 ① -----</p> <p>----- 「<u>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u>」 제7조 관련 별표 1에 따른 -----</p> <p>----- <u>제108조에 따른</u> -----</p> <p>-----</p> <p>② <u>제13조에 따라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별표1 제3호의 수목피해진단·처방 및 치유사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또는 산림조합법 제108조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 하여야 한다.</u></p>
<p>제19조(훼손자부담금) ① 관리청은 <u>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u></p>	<p><삭 제></p>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도로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훼손자에게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관리청과 협의하여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로수 훼손의 경우에는 하자를 고려하여 원상복구 상당 금액을 2년간 예치토록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 졌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훼손자부담금의 징수와 집행 및 원상복구시 하자를 고려한 비용 예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20조(원인자부담금) ①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가로수의 가지치기, 제거 또는 이식이 필요할 경우에는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의 가지치기와 이식은 관리청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세부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제19조 제3항의 별표 2와 같다.

1. 이식하는 경우는 당해 수목의 굴

제20조(원인자부담금) 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가로수의 가지치기, 제거 또는 이식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로수의 가지치기와 이식은 관리청이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원인자부담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 이식하는 경우는 해당 수목의 굴

<p><u>취, 운반, 식재비용</u></p> <p>2. 제거하는 경우는 당해 수목가 및 제거비용</p> <p>3. 가지치기, 훼손 등의 경우는 당해 소요비용</p>	<p><u>취, 운반, 식재비용</u></p> <p>2. 제거하는 경우는 해당 수목가액 및 제거비용</p> <p>3. 가지치기, 훼손 등의 경우는 소요비용</p> <p>④ 관리청은 가로수와 가로수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3항에 따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훼손자가 관리청과 협의하여 직접 복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p>
<p>제21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관리청은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p> <p>② 관리청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가산금 산정에 이를 준용한다.</p> <p>③ 관리청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제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p>	<p>제21조(부담금의 징수) ① ----- -----제20조에 따라 ----- ----- ----- -----</p> <p><삭 제></p> <p>③ ----- 부담금 ----- ----- ----- ----- -----</p>
<p>제22조(관리의 협의 및 재정) ①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가로수의 관리는 관계 관리청의 협의에 의하여 그 관</p>	<p>제22조(관리의 협의 및 재정) ① ----- ----- -----해당 관리청간의 협의에 따라 -----</p>

리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 관리청은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관리청은 시장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훼손자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한 훼손자부담금은 원인자부담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가로수 바꿔심기 및 신규식재에 관한 사항